

#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Perspectives and Outcomes in Remarriage, Stepfamily Research :  
A Review of Literature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임 춘 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Doctoral Course : Choon Hee Leem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재혼·재혼가족의 연구분야 |
| II. 재혼의 특징·유형          | V. 맺는 말           |
| III. 재혼가족연구의 시각 및 연구내용 |                   |

## 〈Abstract〉

Since the 1960s of industrialization, families in Korea have experienced radical changes. One salient aspect of this is the increasing rate of divorces and subsequent remarriages. But few researches were done on the subject of remarriage and stepfamily.

Therefore, this paper primarily introduced perspectives and outcomes on the remarriage and stepfamily in American family research.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organized under three topics ; 1) The characteristics, typology of remarriage, 2) The perspectives and outcomes in remarriage, stepfamily research, 3) The research sphere related to remarriage.

This paper closes with suggestions regarding the future study on remarriage and stepfamily in Korea.

## I. 서 론

일반적으로 사회변동의 흐름은 전산업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사

회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변동을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있다. 가족 형태상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 강한 사회이동성에 의한 핵가족화로 요약되며(윤종주, 1983), 가족행

동상의 변화로는 배우자 선택에서 당사자의 의견 반영, 가장권위의 약화, 이혼율 상승,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 세대간의 대화 단절의 문제, 취업모의 증가, 친족관계의 약화를 들 수 있다(안호룡, 1983). 또한 가족에 대한 태도·의식 또는 가치관을 포괄하는 이념상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이념에서 근대적인 이념으로 변하고 있다(최재석, 1982). 가족변동을 이차림 세가지 측면으로 볼 때 세가지 측면이 동일한 속도의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면과 가치의식의 면에서 舊에서 新으로 옮겨가는 新舊전환의 과도적 단계에 있지만, 가족에 관한 행동과 가치의식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전통적인 가족원리에서 서구적인 근대적 가족원리로 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규범의식과 행동의 양측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최재석, 1982).

그런데, 흔히 산업화에 따른 대표적인 가족형태상의 변화로 핵가족화의 증가를 거론하지만, 핵가족 혼인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1970년대 부터 실시된 인구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혼인의 유형과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 70년대 이후 90년대 초 까지 초혼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며 둘째, 재혼유형이 80년대 초까지 남자재혼+여자초혼 > 남녀재혼 > 남자초혼+여자재혼의 순서였으나, 90년대에 이르러 남자재혼+여자초혼의 비율은 낮아지고 남녀재혼과 여자재혼+남자초혼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로, 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혼인유형은 남녀초혼인 경우를 제외한 재혼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로, 100쌍의 결혼 중 약 8쌍 정도는 재혼의 형태를 띤다고 하겠다.

이외에 인구학적 상황은 1970년대 이후 배우자 사별율은 소폭으로 감소하고 이혼율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유배우율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한국의 사회지표, 1992), 이것은 재혼의 증가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6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중인 산업화와 관련된 가족변동의 한 측면으로 가족형태상의 변화를 혼인의 성격(유형)으로 구체화하여 보면, 남녀초혼의 비율이 지배적이지만 차츰 감소하는 반면, 여러 유형의 재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혼의 증가<sup>2)</sup>

<표 1> 1970-1990년까지의 혼인유형과 구성비(%)<sup>1)</sup>

년 도	혼 인 유 형			
	I. 남녀초혼	II. 남자재혼+여자초혼	III. 남녀재혼	IV. 남자초혼+여자재혼
1972	94.1	3.0	2.4	0.5
1980	94.1	2.9	2.4	0.6
1981	92.7	3.3	2.9	1.1
1989	91.2	3.2	3.8	1.8
1990	91.1	3.1	3.8	2.0
1991	92.3	2.7	3.3	1.6

<표 1>에서 혼인유형은 남녀초혼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70년 이후 90년 초 까지 다음과 같은 통계상의

라는 가족행동상의 변화와도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에 관한 가치관, 관념상의 변화

1) 1972, 80, 81년은 인구동태통계(198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1989, 90, 91년은 인구동태통계연보(1992, 통계청)에서 계산한 수치임. 재혼 구성비는 당해 총 혼인수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2) 이혼율은 1970년 5.1%에서, 80년 7.9%, 90년 10.8%로 증가 추세이다(여성백서, 1991).

는 재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편적 사실이기는 하나 재혼을 공식적으로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은 일선 직장생활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즉,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혼축의금을 초혼의 50%내지 100%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조선일보, 1993.10.25일자).<sup>3)</sup>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sup>4)</sup>와 함께 길어진 노년기를 맞게된 노인들의 재혼은 공식적 통계는 없으나 일선 결혼상담소에서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재혼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동아일보, 93.11.14일자)고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산업화와 함께 진행중인 한국의 가족변동의 한 측면으로 결혼의 유형, 가족행동,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재혼의 증가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즉, 전체 혼인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되는 소수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혼인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이 평생동안 경험하게 되는 결혼지위상의 변화로 볼 때, 재혼은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으로 간주된다(Spanier & Furstenberg, 1987:420). 세계에서 재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미국의 경우, 결혼의 40% 이상이 한쪽 또는 다른 배우자 모두 재혼이였으며, 1987년 결혼한 부부의 21.3%가 재혼가족으로 나타났다(Glick, 1989:25). 또한 최근에는 초혼의 60%가 이혼하고 이혼자 다수가 거의 2년내 재혼한다고 한다(Pa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 일본의 경우, 1989년의 재혼율이 전체 혼인의 15%에 달하고 있다(人口動態統計, 1989). 재혼이 보편적인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전형적으로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것이었으나, 그 이후 이혼으로 인해 재혼이 증가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또한 대다수의 재혼자가 이혼한 사람들이

었다. 물론 재혼과 이로 인해 새로 형성된 가족은 현대 우리 사회는 물론 어떠한 시대나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가족연구의 측면에서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으며,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로 이혼 및 재혼의 증가와 계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1970년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혼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점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연구들에서조차 대다수 이혼자가 얼마후 재혼한다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나의 종결적인 사건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의 재혼 또한 거의 연구관심밖에 있다.

이처럼 재혼이나 그로 인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관심과 연구의 부족은 재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는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재혼이나 그로 인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통념 및 관심결여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특히나 여성의 재혼을 금지·죄악시했던 17세기 이후 확립된 가부장제적 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유교적 관념의 잔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계부모 자녀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용어나 속담<sup>5)</sup>, 그리고 전래동화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용법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듯이 계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으로 재혼이나 계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관심은 사각지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외에 경험적으로 연구하기엔 까다로운 방법상의

3) 그러한 회사방침에도 불구하고 재혼당사자들은 대개 재혼사실을 부끄러워해 회사나 동료들에게 숨기느라 실제 축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혼당사자는 이혼과 재혼등 실제 행동은 앞섰지만, 의식은 보수적인 면을 드러내는 행동과 의식의 불일치를 엿볼 수 있다.

4) 1991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57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67.66세이고, 여자는 75.67세였다(1991年 生命表, 통계청, 1993).

5) 계부모 자녀관계와 관련된 속담들을 총괄해 볼때(한국속담활용사전, 1993) 의붓 관계에 대해서 냉대, 차별, 불신, 불쾌, 진심이 아닌 뜻이 담긴 내용으로 부정적 의미로 일관되어 있다.

문제들 때문에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재혼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새로이 출현하는 결혼유형으로 재혼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하여야 하며, 둘째 부정적이며 다소 문제지향적인 시각으로 재혼이나 계부모 자녀관계를 생각하는 기존의 선입관, 고정관념에 비해 정작 그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점차로 다양해지는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재혼이나 계부모 자녀가족이 갖는 가족관계상의 역동성, 문제점,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족이 보다 건전가족으로 변화해 가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으나 앞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재혼 및 재혼가족 연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연구가 활발했던 미국의 80년대 이후의 재혼과 계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의 기본 시각과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재혼의 특징 · 유형

### 1. 재혼의 특징

재혼의 과정이 초혼과는 달리 복잡하고 상이하다고 보는 특징적인 차이에 대하여 Spanier와 Furstenberg(1987:425)는 다음의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초혼은 재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제공함으로써 초혼이 재혼에 잔재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초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혼사는 현재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불안/만족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재혼은 前배우자와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으며 셋째, 초혼과 재혼은 개인의 생애에서 상이한 시점에서 일어나기에 개인적 성숙, 기대수명,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변화로 인해 재혼상황은 초혼과는 다르다. 넷째, 재혼자는 두가지 상이한 결혼연령집단(marriage

cohort)의 성원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문화적 기준에 노출, 재노출 된다. 즉, 서로 다른 시기에 결혼한 개인은 (가령 70년대 초혼, 80년대 재혼),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각기 다르므로 재혼의 과정은 재혼당사자들이 당대의 기준에 따라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재혼을 부자녀재혼과 유자녀재혼으로 나누어 볼 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재혼은 새로운 결혼으로의 적응과정을 복잡하게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유자녀재혼은 바로 초혼가족과 계부모 가족을 구분하게 한다. 이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재혼이 갖는 특징으로 Sager등(1980)은 다음과 같이 8가지를 언급하였다(Ihinger-Tallman 과 Pasley, 1987:19-20 재인용).

첫째, 자녀가 있는 재혼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을 통해 새로운 성원이 점진적으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원이 충원되는 것으로, 재혼 당사자의 자녀로서는 새로운 부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계부모 자녀간의 애정, 존경이 재혼 후에도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둘째, 재혼은 가족생활주기상의 요구와 과업이 가족원 개인의 욕구나 과업과 양립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셋째, 前배우자와 前조부모가 재혼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족의 경계가 취약할 수 있다. 넷째, 과거 가족경험의 결과로 재혼부모와 자녀간에 충성과 죄의식의 혼란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재혼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각각 前배우자, 부모, 계부모에 대해 각기 다른 충성의 감정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재혼에서 자녀의 존재는 재혼부모와 다른 친부모 사이를 오감으로써 가족경계를 무너뜨리기 쉽다. 여섯째, 자녀들은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재혼결정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자녀는 계부모 가족에서 이질수 없이 그 상황을 맞아야만 하는 관객의 입장과 유사하며 자녀가 가족성원이길 원치 않을 때 다른 가족성원을 괴롭히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일곱째,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수 있으며 여덟째, 모든 재혼가족성원은 역할혼란(role confusion)을 겪는다. 이러한 특징은 Cherlin(1978)의 불완전 제도 가

설을 반영하는것으로 초혼가족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고 있으나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원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외에 前婚에서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관계의 특징에 대해 Elliot(1986, 안병철·서동인 역, 1993: 227-229)는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의붓관계는 생물학적 친족관계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관계이며 둘째, 의붓부모관계는 역할이 귀속적인 초혼가족과는 달리 노력과 수행에 근거하여 충성심과 애정이 획득되고, 유대가 강화되는 식으로 역할이 성취된다. 셋째, 재혼가족관계에 적합한 행위양식이 불확실하다. 이 가운데 특히 의붓관계의 모호성이 재혼가족관계의 취약점이라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의붓관계로 맺어진 친족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없고 재혼가족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제한적이며 분명한 근친상간의 금기가 없으며 의붓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 2. 재혼의 유형

재혼의 유형을 살펴 보기에 앞서 재혼과 관련된 용어로 Furstenberg는 1982년 미국의 결혼-이혼-재혼의 패턴을 기술하면서 “conjugal succession(부부관계의 연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Landis는 “sequential polygamy(순차적인 복혼)”라 하고, Mead는 “serial monogamy(연차적인 단혼)”라 명명하였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21). 재혼을 나타내는 용어는 remarriage에 국한된데 비해 재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는 stepfamily, blended families, reconstituted families, reconstructed families같은 용어들이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는데(Spanier & Furstenberg, 1987:420), 보다 엄밀히 step이란 접두어는 과거 시대에 재혼의 존재 이유였던 사별로 인한 재혼임을 반영한 정의였으며, blended나 reconstituted는 현대의 stepfamily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적인 용어라고 한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40).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구학적인 용어정의를 살펴 볼 때, 재혼가족(remarried family)은 배우자 한

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계부모 가족(stepfamily)이란 부모중 한쪽이 친부모이며 그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을 일컫는다(Glick, 1989:24).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stepfamily는 최소한 1명의 기혼자가 前婚관계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며 그 자녀가 같은 가구에서 사는 경우의 가족으로 정의하여(Crosbie-Burnett, 1989),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구조사시 사용되는 stepfamily household와 stepfamily와는 차이가 있어서(Coleman과 Ganong, 1990:935), stepfamily household는 최소한 1명의 성인이 함께 사는 자녀에게 stepparent인 가구이며, stepfamily는 그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여전히 중요한 가족원을 포함하는 보다 큰 집단의 개념이다.

우리의 경우 재혼이라는 용어는 최근에야 사용하기 시작한 현대적인 용어로 재혼의 의미를 재혼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남성의 경우 재혼을 再娶, 繼娶, 後娶를 들인다, 새장가를 간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再嫁, 改嫁, 再醮, 再緣이라 하였다(한국어대사전, 1986). 자녀의 입장에서 흔히 아버지의 후처를 계모라 하고 어머니의 새남편을 계부라 하므로 stepparent family를 계부모 가족으로 stepchildren을 의붓자녀로 번역하기도 하나, 의붓이라는 접두사는 여자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인 경우와 재혼한 남자나 여자의 새배우자를 알잡아 부르는 경우를 칭한다 할 때(한국어대사전, 1986), stepfamily를 마땅한 우리식 용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stepfamily를 적어도 배우자 한편이 前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으면서 재혼하여 가족을 이룬 경우를 뜻하는 재혼가족으로 번역하여 쓰고자 한다. 그러나 stepfamily는 이처럼 자녀가 있으면서 재혼한 가족이므로 자녀 입장을 고려, 계부모 가족으로도 혼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stepparent나 stepchildren의 경우에는 각각 계부모, 계자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 2〉 재혼의 유형

유형의 근거	학 사	범 주
재혼부부의 결혼지위 (미혼/기혼/사별)	Sogner & Dupaguir(1981)	과거 용어 사용 3가지유형 (a) 홀아비+노처녀 (b) 과부+독신남 (c) 과부+홀아비 이혼을 허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이혼남+노처녀 이혼남+과부, 이혼남+이혼녀 등 미혼, 기혼, 사별 여부에 따라 8집단 분류
자녀의 존재 (무자녀 제외)	Schlesinger(1970)	(a) 계모가족 (b) 계부가족 (c) 계부/계모가족 기타, 공동자녀/계모가족, 공동자녀/계부가족으로 확대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양육권을 행사하는 정도	Ahron(1980)	(a) 前배우자 모두 재혼안함 (b) 前배우자 모두 한쪽만 재혼 (c) 양쪽 다 재혼한 경우 〈양육권의 측면〉 (a) 母의 양육권 (b) 夫의 양육권 (c) 반반 (d) 공동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양육권을 행사하는 두 가구간의 접촉, 애정의 정도	Giles-Sims(1984)	(a) 상호의존적-긍정적 가족 (b) 상호의존적-부정적 가족 (c) 독립적-긍정적 가족 (d) 독립적-부정적 가족
친부모의 결혼지위에 의한 stepfamily분류	Robinson(1980)	(a) 합법적인 계부모 가족 -미혼배우자 (b) 재활성화된 계부모 가족 -사별한 배우자 (c) 재조합된 계부모 가족 -이혼한 배우자

재혼가족의 유형에 대하여 학자마다 재혼가족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재혼부부의 결혼지위, 자녀유무, 자녀의 동거여부, 재혼부부와 前배우자 가구와의 관계등이 유형구분의 준거로 사용되었다(〈표 2〉 참조). 그 중 Ihinger-Tallman 과 Pasley(1980)는 자녀의 유무, 자녀와 재혼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동거유무를 고려하여 복잡성의 수준이 점

차 높아지는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47-48).

이상과 같이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유형은 학자마다 여러가지 준거로 구분하고 있으나<sup>6)</sup> 우리의 경우, 공식적으로 행해진 인구통계조사에서 남녀의 초혼·재혼여부 즉 결혼지위를 기준으로 남자재혼+

〈표 3〉 Pasley와 Ihinger-Tallman(1980)의 재혼부부의 9가지 유형

유형	자녀유무	자녀와 동거여부	자녀와 재혼부부 관계	특 징
유형 1	부부 양쪽이 무자녀			배우자의 결혼경험을 제외하고는 초혼부부와 유사하다
유형 2	재혼부부 사이의 출생자녀		부모의 前婚이 자녀와 무관하다	
유형 3	前婚에서 최소 1명의 자녀		자녀의 미성년 여부에 달려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재혼부부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다
유형 4	재혼부부의 자녀와 前婚 자녀	前婚자녀는 동거하지 않음	함께살지 않는 자녀의 면접권을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가끔 찾아오는 것을 제외하면 초혼부부와 유사하다
유형 5	재혼부부의 자녀는 없고 최소 1명의 前婚자녀	前婚자녀는 동거하지 않음	자녀가 방문할 수도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가 찾아오는 경우 부부생활의 잠재적 참여자임 양육권 문제가 변하면 유형6과 유사하다
유형 6	최소 1명의 前婚 자녀	자녀와 동거		한쪽 배우자만의 자녀가 재혼부부와 거주하는 단순(simple)유형
유형 7	부부양쪽 모두 前婚 자녀	자녀와 동거		구조의 일면으로 이복형제가 (stepsibling) 있는 복잡(complex)유형
유형 8	부부양쪽 모두 前婚 자녀와 재혼부부의 자녀	자녀와 동거		형제집단 속에 재혼한 부, 재혼한 모 사이에서 낳은 반異腹·반異父형제(half-sibling)
유형 9	부부양쪽 모두 前婚 자녀와 재혼부부의 자녀	동거하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		유형 8에서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있는 가장 복잡한 수준

여자초혼, 남녀재혼, 남자초혼+여자재혼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되어있는 정도이다.

### Ⅲ. 재혼가족연구의 시각 및 연구내용

현재까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혼가족, 계부모 자녀가족에 대한 연구는 임상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로 대별되며, 각기 다른 이론적 입장에 의존하여 학문적 경계를 짓고 있다(Giles-Sims & Crosbie-Burnett, 1989:19). 재혼가족 특히 계부모 가족을 중심으로한 연구시각도 크게 두가지 패러다임으로 범주화 할수 있는데, 하나는 문제지향적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규범적·적용적인 시각으로 구분된다(Coleman & Ganong, 1990). 이러한 두가지 패러다

6) 미국의 경우, 인구학적 조사에서 결혼한 부부가족을 초혼가족/재혼가족으로 구분하며 재혼가족은 다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stepfamily와 자녀가 없는 stepfamily로 구분하고 있다(Glick, 1989). 일본은 혼인유형을 夫婦 각각의 초혼/재혼 그리고 재혼인 경우 사별/이혼의 경우로 구분하여 통계를 내고 있다(人口動態統計 中卷, 1991).

임은 각기 상이한 방법론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데, 문제지향법주의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가족구조 간 연구설계로 주로 핵가족과 재혼가족간의 차이를 검토한 반면, 규범적·적응적 관점의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가족구조내 설계로 계부모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재혼가족에 대한 상이한 연구시각에 해당하는 여러 접근법과 그에 따른 연구내용(Coleman & Ganong, 1990:927-931)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제지향적 시각

문제지향적 시각에서 연구문제를 개념화하는 접근들로는 ① 결손비교 접근 ② 스트레스 가설 ③ 사회화 가설 ④ 추가성인 가설 ⑤ 생물학적 차별 가설 ⑥ 불완전 제도 가설등이 있다.

먼저, 결손비교 접근(deficit-comparison approach)은 계자녀(stepchildren)는 핵가족 자녀와 비교하여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계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가설은 1980년대 초반까지 계부모 자녀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었으며, 이 가설에 입각한 연구는 전형적으로 자존감같은 심리적 결과에 초점을 두며 흔히 계부모 자녀를 다른 가족 구조의 자녀와 횡단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재혼시 자녀의 연령, 계부모 가족의 지속연수, 형제와 이복형제의 수,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접촉같은 변수와 부모 재혼의 질, 계부모 자녀관계의 친밀감 같은 과정변수와 잠재적으로 중요한 매개변수를 무시한 채 계부모 가족(stepfamily)을 단일구조로 취급하였다.

스트레스 가설은 스트레스이론에 입각하여 부모의 이혼, 재혼같은 가족생활의 변화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간주하여 그것이 자녀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가설에서 출발한 연구들이 다른 주요변인은 자존감, 행동상의 문제, 인지적 기능이었는데, 자존감의 경우 계부모의 자녀의 자존감은 다른 아동과 유사했으며(Bray, 1988), 우울증이나 불안같은 내면적인 문제와, 싸움·친구관계 결여·결석·퇴학같은 외현적인 문

제행동에서 계자녀가 핵가족의 자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ray, 1988; Ferr: 1984, Zill: 1988). 그러나 문제행동을 다룬 이러한 부류의 연구들은 표본특성이 다르고 문제행동 특성이 다르기에 스트레스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란 곤란하다고 본다. 인지적 기능의 면에서 계부모 자녀의 학업성적이 핵가족 자녀보다 다소 낮지만(Zill, 1988), 사회적 적응을 통제할 경우, 교육적 성취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Ferri, 1984).

사회화 가설에서는 아동기의 가족경험이 개인의 가치관, 태도행동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며, 정신분석과 사회학습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이 가설에 의하면 부모는 중요한 역할모델이자 강화자(reinforcer)로 결혼의 와해와 가족재구성은 아동이 중요한 역할 모델과 접촉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이나 재혼같은 가족경험은 불완전하고 부적합한 사회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회화 가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가·성인 가설(additional-adult hypothesis)이 있는데, 이는 대리부모 가설(substitute parent hypothesis)으로도 불린다. 이 가설은 계부모가 계자녀의 자녀양육 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가정하며, 편부모가구에서 또 다른 성인 즉 계부모가 추가되는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통제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사회화 시각은 종종 자녀에 대한 부친부재 및 부모이혼의 영향연구(Demo & Acock, 1988)에서 사용되었으며 부모됨, 결혼, 이혼과 관련된 계자녀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는데 이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재혼이 계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Coleman & Ganong, 1984; Kinnaird & Gerrad, 1986) 구애(Booth, 1984)태도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핵가족이나 편부모의 자녀보다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고 한다(Coleman & Ganong, 1984; Kinnaird & Gerrard, 1986).

계자녀의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추가 성인 가설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식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Newcomer와 Udry(1987)에 의하면 안정된 재혼가정의 청소년들은 혼전성교비율에 있어서 안정



된 핵가족 청소년과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고한 반면, Steinberg (1987)는 사춘기 전기와 사춘기의 계 자녀가 편부모 가구의 자녀와 유사하여 또래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양친자녀보다 반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여대생의 경우 양친부모의 자녀보다 혼전성교가 더 많았다고 한다 (Kinnaird & Gerrard, 1986).

생물학적 차별 가설(biological-discrimination hypothesis)은 사회생물학으로 알려진 사회적 행동의 진화모델에 입각한 모델로, 계부모는 유전적 유대가 없기 때문에 부모됨의 동기와 정서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가정한다(Flinn, 1988). 이러한 시각의 연구들은 계부가 자신의 자녀보다 계자녀와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Flinn, 1988), 계자녀를 유기하거나,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하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론상으로 결함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제지향적 시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완전 제도 가설(incomplete-institution hypothesis)이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재혼과 계부모 가족은 제도화된 역할수행이나, 문제처리절차,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기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다(Cherlin, 1978). 즉, 재혼은 새로운 관계를 안내해주는 명확히 규정된 규범이 없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계부모의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는데, 계부모의 적합한 역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ay, 1988; Furstenberg & Spanier, 1984). 가령 계부모들은 일반 핵가족이 적당하다고 믿는 그 이상의 자녀 양육역할을 수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재혼자의 1/2이상이 자녀 양육에서 공평한 분담을 기대했으나 실제 1/3만이 자녀양육상의 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에서(Giles-Sims, 1984), 바로 이러한 기대와 행동간의 불일치가 역할모호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호성을 다루는 한가지 방법은 계부모를不在부모의 정서적 대치인(emotional replacement)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한다. White, Brinkerhoff와 Booth

(1984)에 따르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계부와 생부에게 애착을 갖지만 둘다에게 동시에 애착을 갖지는 않는다고 한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계속 자녀의 생활속에 관여, 역할을 맡을 때 계부모와 친부모라는 두명이상의 부모를 갖는다는 불확실성때문에 계부모 자녀관계에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야기된다고 한다.

## 2. 규범적-적응적 시각(Normative-Adaptive Perspective)

80년대 중반부터 재혼가족 특히 계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는 문제지향적 시각을 지양하는 추세로, 특히 계부모 가족의 복잡성을 고려치 않고 계부모 자녀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 결손-비교 시각의 경우 특히 비판을 받았다.

적응적 시각은 이혼과 재혼을 사회문제나 병리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속에서 확립된 규범적인 생활양식의 선택(normative lifestyle choices)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단지 상호작용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핵가족 비교집단을 사용하며, 대개 계부모 가족내의 과정을 연구한다. 이러한 적응적 연구는 주로 계부모 가족관계를 묘사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며 가족체계이론, 가족발달, 사회교환 모델이 중요한 이론적 기저로 사용되었다.

적응적 시각에서는 주로 재혼후의 친부모 자녀관계와 계부모 자녀관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특히 재혼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성에 관심이 주목되었다. 그러나 측정된 종속변수의 다양성과 표집된 자녀의 광범위한 연령 등으로 인해 재혼후 부모자녀에 대한 결론 도출이 어렵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재혼은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 자녀간의 접촉을 감소시키며(Furstenberg & Nord, 1985), 모친이 부친보다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접촉을 더 유지하려고 한다(Seltzer & Bianchi, 1988). 또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와 정적인 상관이 있지만(Zill, 1988),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들은不在부모와의 유대가

감소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Clingempeel & Segal, 1986; Furstenberg & Nord, 1985). 그리고 계모, 계부와 사는 아이들간의 정서적, 심리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Zill, 1988). 그러나, 어떤 계부모 자녀관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계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의 대리인이며 특히 친부모와 접촉이 없을 때 더욱 그러하다(Seltzer & Bianchi, 1988). 계부모와 계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는 친부모자녀의 유대보다 덜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Ganong & Coleman, 1987), 갈등의 특성을 갖기 쉽다(Ferri, 1984)고 한다.

규범적이고 적응적인 연구는 계부모 자녀관계의 질을 예측하는 변인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데 계부는 계모보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다고 한다 (Ambert, 1986; Hobart, 1987). 아마도 이것은 계모가 계자녀양육에 역할이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Ahrons & Wallish, 1987). 계부 또는 계모가족에서 사는 청소년의 적응을 본 최근의 연구(Fine & Kurdek, 1992)에서도, 계부와 사는 청소년이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 문제행동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더 좋고 건강하다고 한다. 같은 연구에서 계부모 가족내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상황보다 개인내적 특성(mastery), 부모양육 방식, 가족과정변수와 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령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청소년자녀의 적응과 가족과정간의 관계는 초혼가족이나 계부모 가족이나 유사한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모두 前婚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계부모 자녀관계가 소원하다고 한다(Brand & Clingempeel, 1987). 그러나 같이 사는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보다 더 친밀하며 (Ampert, 1986) 계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은 부모재혼후의 출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anong & Coleman, 1986). 계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재혼만족도는 높고 부부갈등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Coleman & Ganong, 1987; Orneans et al., 1989). 시간경과에 따른 계부모 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계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된다는 증거가 있는데 (Guisinger, 1989) 즉,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모역할에 대해 덜 낙관적이 되며 계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 IV. 재혼 · 재혼가족의 연구 분야

재혼 및 재혼가족 특히 계부모 자녀가족에 대한 연구시각과는 별도로 연구가 진행된 분야를 살펴볼 때, 크게 1. 재혼에서의 부부관계 2. 노인과 재혼 3. 계부모의 기능과 행동 4. 계부모 가족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재혼에서의 부부관계

재혼에서의 부부관계를 검토한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만족수준, 결혼의 질, 결혼적응, 전반적인 복지감, 부부관계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두어 전형적으로 재혼자와 초혼자를 비교하였으나, 최근에는 재혼가족의 상이한 유형을 비교하는 것 같은 집단내 비교에 관심을 두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Pasley et al., 1993:315).

재혼의 결혼 만족도와 결혼의 질에 대해, 80년대 연구에서 3가지 가설이 주장되었는데(Coleman & Ganong, 1990:931) 이는 모두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율이 높은, 즉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향(Predisposition)가설(Furstenberg & Spanier, 1984) 또는 선택성 (Selectivity)가설이라고 부르는 입장에서 재혼의 결혼생활이 취약한 이유로 재혼자들이 결혼불행을 이혼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부분적해를 해결하려는 동기와 노력의 부족은 결혼의 질 자체보다 당사자의 성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번째로, 재혼을 불완전한 제도로 보는 가설(Cherline, 1978)에서는 재혼과 관련된 행동을 안내해주는 규범이 없기 때문에 재혼의 만족도가 낮다고 한다. 심리병리학적 가설에서는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음주나 성격장애 같은 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많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재혼의 질과 안정성이 감소된다고 본다(Brody 등

1988). 마지막 가설을 제외한 처음과 두번째 가설은 경험적으로 다소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결혼의 질과 만족도에 관한 34개 연구를 meta-analysis한 결과(Vemer, Coleman, Ganong & Cooger, 1989)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초혼자/재혼자, 재혼한 남성/여성, 계부/계모, 동거자녀 유/무, 한쪽이 계부모/양쪽이 계부모인 경우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단, 초혼이나 재혼이나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았다(Pasley, Dollahite, Ihinger-Tallman, 1993: 315). 재혼만족도에 대한 자녀의 영향에 대해서 (Pasley et al., 1993:316), 자녀의 존재 자체가 재혼의 성공율을 낮춘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고 하며(Martin & Bumpass, 1989), 계부모 자녀 관계의 질이 재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계부는 계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결혼의 질을 높게 보고했으며(Clingempeel, Brand & Ievoli, 1984), 부인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계부인 남편과 자신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성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다(Hobart, 1988). 또한 남편의 아이와 계모간의 관계의 질과 역할기대의 모호성이 양측 배우자가 결혼의 질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계모의 경우 자녀양육상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시간경과에 따른 결혼불만의 가장 강력한 예측치였다(Guising et al., 1989).

재혼에서 배우자 두사람만의 상호작용에 국한하여 볼 경우, 공통적으로 부부간의 합의와 의사결정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합의의 빈도에 대한 인식이 같은 부부가 결혼행복을 더 느끼며(Pasley, Ihinger-Tallman & Coleman, 1984), 계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 합의과정이 결혼적응에 가장 강력한 지표였다. 재혼후의 자녀출산은 임상적인 관찰에서 재혼가족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암시되었으나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mbert 1986; Ganong & Coleman, 1988).

그외에 사회적 지원이 재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밝혀졌으며(Coleman & Ganong, 1990:931), 대체로 인구학적 변인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관계의 질과 상관이 있었다(Kurdek, 1989). 그리고 초혼처

럼 재혼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isinger et al., 1989). 그런데 기능적인 초혼가족, 역기능적인 초혼가족, 재혼가족을 연구한 바 (Anderson & White, 1986)에 의하면, 부부적응이 기능적인 가족의 경우 더 잘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계부모 가족의 부부적응이 초혼가족인 경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연구는 계부모가족에서의 부부관계와 가족기능은 핵가족의 경우보다 관련이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재혼에서 배우자 두사람만의 상호작용에 국한하여 볼 때, 공통적으로 부부간의 합의와 의사결정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합의의 빈도에 대한 인식이 같은 부부가 결혼행복을 더 느끼며(Pasley, Ihinger-Tallman & Coleman, 1984), 계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 합의과정이 결혼적응에 가장 강력한 지표였다. 재혼후의 자녀출산은 임상적인 관찰에서 재혼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암시되었으나,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mbert, 1986; Ganong & Coleman, 1988).

## 2. 노인의 재혼

노인의 재혼과 관련된 연구들을 볼 때(Coleman & Ganong, 1990:932), 재혼한 사별여성이 재혼을 안한 사별여성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고, 자존감과 생활만족도는 높으며, 우정에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슬픔해소가 긍정적인 수준이었다(Burk & Lurd, 1988). Bulcroft(198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재혼하기 쉽다고 하며, 재혼이 결혼만족과 행복과 관련있다고 한다. 재혼한 사별여성은 재혼을 안한 사별여성보다 비록 재혼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표명했지만 전체적으로 고민거리가 더 적었다고 한다(Gentry & Schulman, 1988).

1980년대 미국의 노인연구들을 고찰한 내용(Brubaker, 1990:967)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에서 노인은 연령과 과거 결혼경력에 대해 젊은 사람보다 덜 동질적이었으며 결혼전 거주지 근접성을 많이 고려하였다(Dressel, 1980). 재혼후의 적응에 관해서는, 이

혼자든 사별자든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재혼의 적응에 중요하다고 한다(Moss & Moss, 1980).

그러나 실제 재혼하는 노인의 수는 적어서 미국의 경우 1980년 65세이상 혼자된 노인 중 남자는 26% 여자는 1%미만이 재혼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도 문화적으로 사별후 행동에 대한 연령층화된 사회적 기대와 사망한 배우자에게 사별한 여성을 연계시키는 공공정책 등으로 인해 혼자된 노인의 재혼에 걸림돌이 많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1990년 현재 60세이상 고령자 인구가 332만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며, 혼인상태는 유배우율이 54.9%<sup>7)</sup>로 최근 들어 노인재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노인의 재혼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기나<sup>8)</sup> 노년학회에서 처음으로 노인의 재혼을 주제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sup>9)</sup>

재혼상담을 신청한 노인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조기동, 1993)에 따르면 남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혼을 희망하였고, 여성의 경우 65세이상의 재혼희망은 극히 적었다. 같은 연구에서 노인의 재혼 상대 선택의 조건은 현재 건강상태, 경제력, 직업, 미혼자녀의 유무 및 자녀와의 관계, 기타 연령차이였으며, 노인의 재이혼은 28쌍의 성사된 재혼 가운데 30%가 재혼 1년내 다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3. 계부모의 기능과 행동

초혼가족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재혼하여 새로 형성된 가족의 궁극적인 적응에 배우자 역할과 계부모 역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때, 재혼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계부모의 역할에 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부모됨이 귀속적인 초혼가족과는 달리 재혼가족에서 부모됨은 자의식적이고 성찰적인 것으로(Clark,

1982; Elliot, 1986:228 재인용), 계부모의 역할은 친부모의 역할보다 어렵고 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동화나 대중매체, 일반적 인식에서 step(의붓)이라는 용어에 붙여진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의미때문에 타인의 자녀의 부모노릇을 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더 야기된다고 한다(Coleman & Ganong, 1987; Pasley et al., 1993:317).

계부모역할에 대한 경험적 임상적 연구들의 초점은 대개 계부모 역할의 모호성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결과(이하 Pasley et al., 1993:317 재인용)에 의하면 친부모와 계부모는 모두 계부모가 부모역할과정에 덜 관여할 것을 기대하며 덜 관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계부모의 행동에 대해 Bray(1987)등은, 계모가 초혼가족의 모보다 일반적으로 엄격, 독단적인 통제 등 권위주의적인 양식을 보인다고 하며, 계부는 계자녀에 대해 권위가 서는(authoritative) 방식보다는 허용적으로 훈육에서 일관성이 적고 행동상의 재량권은 많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혼초기 양배우자의 순조로운 부부적응은 계부가 훈육역할을 일찍부터 맡지 않는다는 배우자간의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전의 부모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이전에父였던 계부보다 부모경험이 적은 계부의 부부적응이 낫다고 하며(Palisi, 1991), 부모가 아니었던 계부가 자녀가 있던 계부보다 계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계모의 역할은 계부보다 더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모가 일차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 한다(Guisinger, 1989). 또한 계모는 계부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부모역할의 불만족이 크다고 한다(Ahrons & Wallisch, 1987).

Hetherington(1991)에 의하면 어린자녀의 경우 통용되는 부모행동이 나이든 자녀에게는 비효율적이며, 권위가 서는(authoritative) 양육행동이 초혼과는 달

7) 1990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 8권 고령자 편(통계청, 1993)

8) 노인의 재혼상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활동연령이 높아지고 경제적 능력을 가진 노인층의 증가가 주요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과 노부모간의 分家욕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93.11.14)

9) 1993년도 한국노년학회·한국노인병학회·한국노화학회 연합학술발표대회(1993.11.20)에서 <노후의 성생활과 재혼>이 주제로 다루짐.

리 재혼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계부의 지배적인 양육행동양식은 관계를 분리(disengagement)하는 것으로 계부는 온정, 통제, 감시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계자녀와의 갈등을 안정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계부와 청소년자녀의 관계는 계자녀의 거부로 인해 계부가 권위를 세우기 어려우며,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한다.

요컨대, 가장 성공적인 계부모-계자녀관계는 양자가 온화하고 친밀한 상호작용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Stern, 1978), 상호존중과 애정의 기초가 일단 형성되면 계부모가 훈육자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계자녀의 반발을 사지는 않을 것이라 한다.

#### 4. 계부모 가족(Stepfamily)의 기능과 적응

80년대 재혼과 계자녀에 대한 연구의 양에 비해 전체 계부모자녀 가족단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실험실 상황에서의 가족관찰, 종단연구, 상이한 유형의 stepfamily 비교 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Coleman & Ganong, 1990:933).

널리 사용된 가족 측정도구에서 계부모 가족은 응집력이 낮고,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서 핵가족보다 덜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으나, 그러한 측정도구에서 계부모 가족의 평균은 “기능적”이며 “비이상적인” 가족범위 이내로 나타나 효과적인 계부모 가족 기능의 양상은 핵가족의 경우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Anderson & White, 1986; Orleans, Polis, Caddell, 1989). 한편, 계부모 가족의 기능에 대한 가족외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행해진 소수의 연구는 사회적 지원(Kurderk, 1989)과 Step관계에 대한 신념(Bray, 1988; Kurderk & Sinclair, 1986), 계부모와 계자녀의 문화적 고정관념(Ganong, Coleman & Maps, 1990)등을 다루었다.

Pasley등(1993)에 의하면 계부모 가족의 기능에 관한 임상적 문헌들은 재혼가족이 초혼가족보다 역기능적이기 쉽다고 주장하나, 경험적 연구는 재혼가족에서 응집력수준이 낮고 융통성있는 성격이 극단적인 행동이나 임상적인 역기능을 나타내진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잘 기능(well-functioning)하는 계부모 가족은 부모자녀간의 강하고 긍정적인 유대가 있으며 가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배제시키려 하지 않고 가족결정을 타협하는 능력이 있다는 면에서 좋은 결혼적응을 보이는 초혼가족과 유사하다고 한다(Anderson & White, 1986). 또한 역기능적인 초혼가족과 역기능적인 계부모 가족은 유사성이 있는데, 둘 다 부모자녀간의 결탁(coalition)이 심하고, 모든 가족원의 욕구가 충족되는 의사결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라 한다.

초혼가족에 비해 계부모 가족에서 응집력이 낮지만 그 차이는 계부모 가족에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응집력이 낮다는 것이 역기능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Smith, 1991). 그런데 계부모 가족이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Crosbie-Burnett(1989)은 개방된 의사소통, 권위/지위구조에서의 융통성, power의 공유, 과거 스트레스에 대한 성공적 대처경험을 꼽는데 무엇보다 계부모 가족생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자원이라 한다. 새로운 계부모 가족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계부모 가족은 즉각적인 애정(instant love)을 경험하며 재구성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는 핵가족을 ‘실체’ 가족으로 삼는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라 한다.

계부모 가족(stepfamily)의 적응에 대한 모델은 대개 임상적 연구에서 도출되었는데 Mills(1984)와 Papernow(1984)가 개발한 모델은 모두 계부모 가족의 적응과 통합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117). 첫째, 새로운 계부모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비현실적 기대, 꿈을 버리고 둘째, 개개 가족원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것을 전체가족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에 통합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로 가족원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역할, 규칙, 의례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Giles-Sims와 Crosbie-Burnett(1989)은 계부모 가족에 대한 임상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의 입장을 통합한 발달적 모델(Integrated Step-

family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 V. 맺는 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가족변동은 가족의 형태, 행동, 이념등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속도가 동일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가족형태나 행동상의 변화는 앞서나, 가족에 대한 의식이나 규범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차이(gap)를 이루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재혼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재혼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나 조선 중기 이후 확립된 유교적 가부장제 가족문화의 잔재로 인해 오늘날 현실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혼인 유형이면서도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사회일반의 인식과, 재혼이나 계부모 자녀가족이라는 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거나 감추려는 재혼한 개인이나 가족당사자들의 의식으로 인해 재혼한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가족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구(invisible population; Ihinger-Tallman & Pasley, 1987: 134)로 존재해 왔다.

그러한 결과의 하나로 우리의 경우, 가족의 연구분야에서 재혼가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학적으로 증가하는 결혼형태의 하나이자 현재 우리의 가족변동의 여러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대상으로서, 재혼과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개인과 가족이 재혼과 같은 예정치 못했던 인생사건(unscheduled life events)에 어떻게 대처, 적응해 가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재혼이 우세한 생활양식으로 자리하며 그에 대한 연구성과가 누적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재혼 및 계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시각과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혼과 재혼가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인 차이는 있으나, 재혼이나 계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문화적 고정관념에서 우리사회와 유사성이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연구추세가 재혼을 다양한 생활방식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규범적, 적응적 관점으로 재혼가족내의 역동,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는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재혼이나 계부모 가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고정관념은 만연한 반면 정작 경험적인 연구나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 할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가정학의 중요한 일분야인 가족생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건전가족(strong family), 기능적 가족(functional family), 가족향상운동(family enrichment movement)으로, 가족의 병리성을 예방하고 가족의 건전성 및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할 때(오윤자, 1992), 비록 전체가족에서의 비중이 적은 소수의 가족유형(minority family type)이라고 해도 바로 그러한 가족생활교육이 이뤄져야 할 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유형 가운데서도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계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와 부모 자녀가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재혼에 대해 발언권은 갖지 못하나, 재혼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혼유형은 보다 구체적으로 생부와 계모로 된 가족과, 생모와 계부로 된 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계모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만큼이나 많이 접하는 재혼의 형태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상 문제의 소지가 많은 재혼가족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sup>10)</sup> 계부모가족의 경우 같은 재혼가족으로 비교대상이 될

10) 성인 범죄자의 청소년기 시절 부모의 결혼상태에 대한 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114)에서 남녀 재소자 모두 부모가 실부모인 경우를 제외하면 편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여성의 41.0%, 남성의 35.8%), 생부계모인 경우가 다음을 차지한다(여성의 12.0%, 남성의 14.2%). 이것은 청소년기 시절 편모 다음으로 생부계모인 가족에서 성장한 범죄자가

수 있으며, 최근 남녀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점차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sup>11)</sup> 또한 재혼의 동기별로 구분하여 사별인 재혼과 이혼인 재혼으로 나누어 볼 필요도 있다.

다음으로 노년기가 연장되고 노년층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노인의 재혼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노인을 포함하여 재혼을 계획하거나 준비중인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현재 재혼가족을 이룬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개입(intervention)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재혼이 많이 행해지는 미국의 경우조차도 대개의 재혼준비방법이同居(Ganong & Coleman, 1989: 28)로, 재혼전 교육이나 재혼준비 orientation이 없는 상태로 생소한 상태에서 계부모 가족에 돌입한다고 하며, 그러한 경우 재혼의 이혼 즉 재이혼을 또한 높다고 하는 결과와 단편적이거나 재혼한 노인의 이혼율도 30%에 달한다는 우리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연구작업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혼이나 재혼가족의 연구에 필수적인 재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구 통계가 우선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2년 인구동태통계, 1982.
- 2) 김도환, 한국속담활용사전,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3.
- 3) 대한민국국회사무처, 국회통과법률집 28집, 1990.
- 4) 안병철, 서동인 옮김, 가족사회학(F. R. Elliot, 1986), 서울 : 을유문화사, 1993.
- 5) 안호룡, 가족형태와 핵가족적 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6) 오윤자,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209-223.
- 7) 윤종주, 우리나라 가족형태 및 가족주기에 관한 조사연구, 인구문제논집, 24, 1983, 89-122.
- 8) 조기동, 혼자사는 노인과 재혼, 한국 노년학회 · 한국노인병학회 · 한국노화학회 '93 연합학술발표대회 초록집, 1993, 13-30.
- 9) 조병은, 가족의 위기와 해체, 가족학,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서울 : 하우, 1993, 321-354.
- 10)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1.
- 11) 최재석, 한국가족의 해체에 관한 연구, 1981.
- 12)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 13)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8권 고령자편, 1993.
- 14) 통계청, 199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1992.
- 15) 통계청, 1991년 생명표, 1993.
- 16) 통계청, 1992년 한국의 사회지표, 1992.
- 17)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대사전, 서울 : 삼성문화사, 1986.
- 18)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91.
- 19) 한국정책연구원,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93.
- 20) 厚生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財團法人厚生省統計協會 編, 平成元年 人口動態統計 中卷, 1991.
- 21) Brubaker, T. H., Families in later life : A Burgeoning research are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 959-981.
- 22) Coleman, M. & Ganong, L. H., Rem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925-940.
- 23) Crosbie-Burnett, M., Application of family stress theory to remarriage : A model for assessing and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 11) 소년범죄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조사(체육청소년부, 1991:88)에서는 실부모인 경우를 제외하면 편모가정이 가장 많았고(1990년 8.2%), 1989년 이후 실모계부가정의 청소년 범죄(88년 0.9%, 89년 1.6%, 90년 2.5%)가 실부계모가정인 경우(88년 0.9%, 89년 0.8%, 90년 0.9%)에 비해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 재혼가족에 대한 정보는 극히 구하기 힘들고, 재혼가족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는 이처럼 대개 범죄자의 가정환경과 결부시킨 내용뿐이어서 이나마 부득이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 helping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8, 1989, 323-331.
- 24) Fine, M. A. & Kurdek, L. A.,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992, 725-736.
- 25) Ganong, L. H. & Coleman, M., Preparing for remarriage: Anticipating the issues,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38, 1989, 28-33.
- 26) Giles-Sims, J. & Crosbie-Burnett, M., Stepfamily research: Implications for policy, clinical interventions, and further research, *Family Relations*, 38, 1989, 19-23.
- 27) Glick, P. C., Remarried families, stepfamilies, and stepchildren: A brief demographic profile, *Family Relations*, 38, 1989, 24-27.
- 28) Ihinger-Tallman, M. & Pasley, K., *Remarriage*, Sage Publications, 1987.
- 29) Pasley, K., Dollahite, D. C. & Ihinger-Tallman, M., Bridging the gap: Clinical ap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1993, 315-322.
- 30) Spanier, G. B. & Furstenberg, F. F.,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 K. Steinmetz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1987, 419-432.
- 31) Worthington, L. E. & Gong-Soog Hong, Divorce and remarriage: Challeng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84, 1992, 24-27.